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04
----------	-----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6월 14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 제안이유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적절한 방향 설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 시기, 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시의 소속기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 시행 중인 자치법규, 시 소관 정책,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정책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함.(안 제18조)
-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예고 (2019. 3. 21. ~ 4. 10.) 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현재 「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시행중인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총 4개의 장으로 20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으로 서울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으로 설정하고,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안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안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안 제9조), 정책 등의 개선·권고(안제12조) 등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제13조~안제17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안 제18조), 성별영향평가 교육(안 제19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장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운영세칙)
---	--

<p>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p> <p>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p> <p>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p> <p>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p> <p>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p> <p>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p> <p>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p> <p>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p> <p>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p>	<p>제4장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p> <p>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p> <p>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p> <p>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p> <p>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p>
--	--

2 주요사항 검토

□ 총칙 규정(안 제1조~제4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안 제5조~제12조)

- 제정안(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안
<p>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p>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p>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p> <p>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p> <p>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p> <p>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p> <p>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 다만 안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안 제2조제3호1)에서 정의한 공기업 등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제안안
<p>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생략)</p> <p>1. ~3. (생략)</p> <p>4. 그 밖에 <u>공공기관</u>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p>	<p>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원안과 동일)</p> <p>1. ~3. (원안과 동일)</p> <p>4. 그 밖에 <u>공기업 등</u>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p>

1)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기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안 제6조2) 역시 법 제9조를 그대로 반영하였음.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안
<p>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정안(안 제7조3)은 법 제8조에 따라 평가의 적기시행을 통한

2) 제정안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3) 제정안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 전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를 평가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특히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책 수행 중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책 수행 과정에 추가적인 평가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부담이 될 소지가 있음.

○ 제정안(안 제8조4)은 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경과를 시책사업이나 성인지 예산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결과가 시정의 환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안 제10조5)에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중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시민 대상 홍보물의 경우 시정방향이나 철학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4) 제정안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제정안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公衆)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조례안(안 제11조6)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대상을 법을 차용하여 조례·규칙 및 시 소관 정책,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대상과제의 심의·선정을 안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법에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6) 제정안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제17조)

- 제정안(안 제13조7)에서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해당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1조에 따라 성평등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체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동 제정안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 사유라 할 수 있음.

7) 제정안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안 제14조)은 15명 내외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⁸⁾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⁹⁾에 따라 위원이 성별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밖에도 위원장, 위원회 운영 사항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규정하였음.

□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안 제18조~제20조)

- 제정안(안 제18조¹⁰⁾)은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

8)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정안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관의 장인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성별영향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14조제1항11)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조례안(안 제19조12))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양성평등법」 제18조13)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의214)에 따라 유사한 성인지교육을 2018. 9. 28.부터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두 교육간의 중복성이 있어 성별영향평가 담당자로 한하거나, 두 교육간의 교차수강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 11)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12) 제정안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3)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1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0조에서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시장으로 하여금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 제17조제1항15)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사항16)

- 금번 제정안은 부칙을 통해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성평등 기

15)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16) 제정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를 “정책개발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문을 설치한 바, 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과 중복되는 조항과 내용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임.

-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개별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추가적인 입법 절차 등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비용을 줄이고, 입법 효율성 차원에서 부칙을 통해 처리하려는 내용임.

□ 그 외 사항

-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 개정 통보”, 성별영향평가과-504, 2017.02.07.)에는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바,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 반영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여 시정 전반에 성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00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2조(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시·도/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정의규정에 명시된 용어가 통일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상위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시장이 지정하게 한 점, 제정안에서 성별영향평가교육과 성인지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중복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서 제안된 의회보고 규정을 추가하는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04
----------	-----------

제안연월일 : 2019년 6월 14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법정 의무교육인 성인교육과 중복되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대상자를 성별영향평가 대상자로 한정하며, 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권한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등의 의회제출 의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통일을 위해 “공공기관”을 “공기업등”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4호).
- 성별영향평가 교육대상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성별영향평가 담당자”로 수정함(안 제19조).
- 시장을 권한을 초과하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권한을 삭제함(안 제20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서등의 의회제출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을 “공기업 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소속 공무원”을 “성별영향평가 담당자”로 한다.

제20조 중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생략)</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u>공공기관</u>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p>	<p>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원안과 동일)</p> <p>1. ~ 3. (원안과 동일)</p> <p>4. ---- <u>공기업 등</u>----- ----- -----</p>
<p>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u>소속 공무원에게</u>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 ----- ----- <u>성별영향평가 담당자에게</u> ----- ----- -----</p>
<p>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u>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 ---- ----- ----- ----<u>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제21조(<u>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u>)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한 <u>성별영향분석평가서</u> 및 제9조에 따라 <u>성별영향분석평가의</u></p>

원 안	수 정 안
	<u>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u> <u>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의회에</u> <u>제출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실·본부·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기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

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 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그 밖에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시의 정책 및 사업 등,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公衆)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에게 자치법규,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 등의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성평등 정책·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기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전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위원회의 운영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법」을 「성별영향평가법」
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
다.